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3. 18

다. 상 정 일 자 : 2002. 3. 18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광 화 열

나. 개정사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토지, 건물의 정경유지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생활환경을 정결히 유지코사 함.

다. 주요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용어 및 처리절차규정(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항)
- 청결유지 책부자의 범위 규정(안 제5조)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사 또는 관리자중 실제토지· 건물을 소유
 -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
-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규정(안 제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토지· 건물내· 외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토지 건물에서 페드럼통등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 난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하는 행위
 -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여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의3)

-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변경(안 제16조제1항)
 - 생활보호법 기탁보호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
- 공사상생활폐기물관련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으로 조례안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그 동안 법령의 공백이었던 5톤미만의 공사상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 3 역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사에게 청결의부, 조지명령과 과태료 근거를 조례화 한 것으로서, 본군의 환경정화에 크게 공헌할 것과 아울러, 시행 중에 민원 등의 발생이 우려될 것으로 검토됨.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어부등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처리하게 할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 4.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 (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거택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생략)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 <u>공사장생활폐기물</u> ”이란 <u>함은 생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u>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② (생략) (신설)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사의 처리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고시된 수수표를 납부하거나,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나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u>
제5조(군민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나 폐기물등을 제거토록 명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다수인이 폐기물을 두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 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사가 폐기물을 직접처리 (보관시설 없는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혼날리거나 유출로 주변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신설)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신설)</p>	<p>1개월의범위내에서청결을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다만,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p> <p>제5조의3 (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받는토지·건물의 소유자·집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명령을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집유자 또는 관리자가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6조(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에 대하여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p> <p>1. <u>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u> <u>거택보호대상자</u> ,소년·소녀가장 및 이상</p> <p>2.(생략)</p> <p>②생략</p>	<p>제16조(수수료 감면)①(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u> 수급자</p> <p>2.(현행과 같음)</p>